

2023년 지역상생형 RE100 산업단지 표준모델 실증 사업 공고

산업단지의 한국형 RE100 참여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3년 지역상생형 RE100 산업단지 표준모델 실증」을 위해 RE100 산업단지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3년 지역상생형 RE100 산업단지 표준모델 실증 사업**

□ **사업목적**

- RE100 산단 시범사업을 통해 산단 내 기업에 재생에너지 최적화 공급 등 효율적 RE100 이행을 위한 RE100산단 표준모델 실증 추진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3.12.31.까지***

* 사업기간은 과제 수행 진도점검 등을 통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 연장 예정

□ **사업자 대상**

- RE100 산업단지 추진을 희망하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3개)

- (신청기관) 기초지자체(또는 광역지자체) 컨소시엄

* 기초지자체(또는 광역지자체)와 주관기관(사업관리기관) 참여 필수

**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은 사업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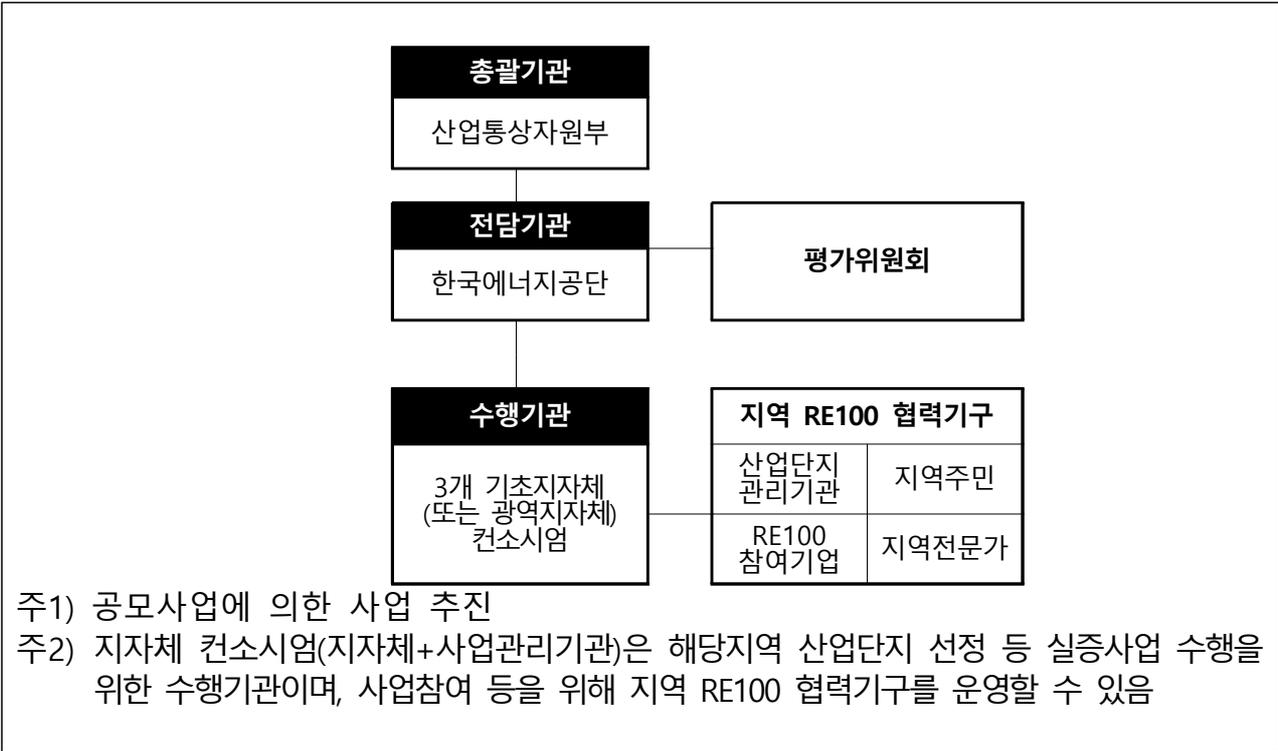
*** 사업관리기관은 자가설비용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 등 참여기업 재생에너지 이용·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경험)을 갖추고 있어야함

**** 산단 내 참여기업은 최소 3개 이상(최소 2개는 중소·중견기업 필수)

(예시) 대기업 1개, 중견 1개, 중견 또는 중소기업 1개 → 참여가능

대기업 2개 중견 또는 중소기업 1개 → 참여불가

□ 추진체계 및 역할



○ 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정책 수립, 사업계획 총괄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사업공모 시행계획 수립 ○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을 통한 사업수행 관리·지원 ○ 사업비 조정, 지급 및 정산 등 사업비 관리 ○ 실증사업 총괄 점검·관리(실태점검 및 종합관리)
평가위원회 (관련 전문가)	○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사업운영 적정성 등의 평가
수행기관 (지자체 컨소시엄)	○ 지역상생형 RE100 산단 실증사업 사업계획 수립 제출 ○ 실증참여기업, 산단 관리기관 컨소시엄 구축, 운영 ○ RE100용 재생에너지 최적화 공급방안 마련 및 공급 실증 ○ 지역, 업종, 산단 주변 보급여건 등을 고려한 표준화 모델 개발 ○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시장정보 제공, 이행계획 마련 등 컨설팅 ○ 원활한 사업진행, 주민수용성 개선 등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 표준화모델 개발, 실증 데이터 분석 작업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사업내용

○ RE100 산업단지 운영·관리

① 산단 내 RE100용 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수단 지원

- RE100 이행을 위한 자가설치 태양광, 소규모 풍력 등 설치지원(On-site), 산단 주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자가설치 지원(Off-site)
- PPA 계약 망이용료 지원, RE100용 REC 조달, VPP 방안 등 이행방안 지원
- RE100 달성 목표연도에 따른 최적화 이행경로 수립 등 컨설팅, 산단 내 기업 RE100 재생에너지 개발 및 조달을 위한 협동조합 운영 등 기타 인센티브 지원

② 지역상생형 RE100 산업단지 표준화 모델 개발 및 실증

- 지정 산업단지의 지역 특성, 주력 업종, 산업단지 입지 및 기업 환경(에너지 사용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한 산업단지-기업 RE100 표준화 모델, 이행계획 수립
 - 수립된 표준화 모델을 기반으로 실증참여기업에 대한 최적화 RE100용 재생e 보급
- ※ 표준화 모델 개발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최대 20% 내로 제한, 간접비도 5% 이내로 제한

③ RE100 산단 추진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산단 주변 RE100용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지 개발, 유휴부지 확보, RE100 산단 주변 주민수용성 개선 등을 위해 RE100 산단 추진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지원
- * 거버넌스 구성 : 지자체, 산단 관리기관(산단공 등), 실증참여기업 등이 참여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RE100 산업단지 추진을 희망하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3개)

- (신청기관) 기초지자체(또는 광역지자체) 컨소시엄 주관기관
 - * 기초지자체(또는 광역지자체)와 주관기관(사업관리기관) 참여 필수
 - **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은 사업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구성
 - *** 산단 내 참여기업은 최소 3개 이상(최소 2개는 중소·중견기업 필수)
- (지원내용) 산업단지 당 국비 3.3억원(3개산단*3.3억=10억원)
 - * 참여기업의 경우 향후 재생에너지 지원사업(설치지원사업, 망사용료지원사업 등)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우대조치 예정

3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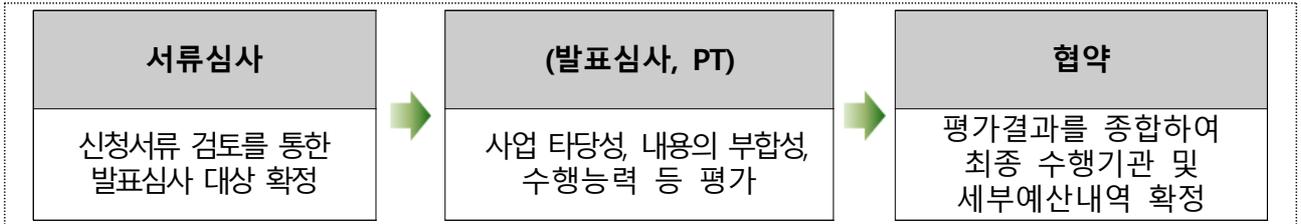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비 고
수행기관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오프라인) 	신청기관→전담기관
↓		
수행기관 선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전문가 등) 	전담기관
↓		
선정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선정 통보 	전담기관→수행기관
↓		
사업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수정(사업내용, 예산 등) 	수행기관→전담기관
↓		
협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수행기관↔전담기관
↓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100 산업단지 운영관리 추진 ■ 산업단지 및 기업 컨설팅 	수행기관
↓		
사업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100 산업단지 실증 사업내용 결과 보고 ■ RE100 산업단지 및 기업별 RE100 이행 결과 보고 	수행기관
↓		
사업비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완료,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보고서 검토 	수행기관→전담기관
↓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과 관리 및 시설관리 등 	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 절차

□ RE100 산업단지 실증사업 수행기관 선정 절차

- 서류심사(1단계) 이후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 심사(2단계)를 거쳐 종합평가 실시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적발 시, 수행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1) 서류심사

- 전담기관이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참여제한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미충족 시 발표평가 배제
-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사업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2)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가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사업수행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수행기관 선정
-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 평가위원 비중을 과반수 운영
- 발표평가는 총괄책임자의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점수 산정
- 최고점수를 획득한 순서대로 신청기관을 수행기관(컨소시엄)으로 선정
 - *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동점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 발표는 주관기관(사업관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발표평가 평가기준

○ RE100 산업단지 실증 수행사업 평가표

평가구분		주요내용 및 평가기준														
정량평가	산단 내 참여기업 수 (10점)	10점 11개 이상	8점 9개 이상 11개 미만	6점 7개 이상 9개 미만	4점 5개 이상 3개 미만	2점 3개 이상 5개 미만										
	국비(3.3억원) 대비 지방비 민간 현금 매칭 비율(10점)	10점 100% 이상	8점 100% 미만 75% 이상	6점 75% 미만 50% 이상	4점 50% 미만 25% 이상	2점 25% 미만										
정성평가	기업 및 지역 참여 노력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단 내 참여기업의 RE100 이행 의지 및 사유 (재생에너지 조달 사유 등) 시민 참여의지 (재생e 수용성, 협의체, 협동조합 등) 및 지자체 참여의지 (부지 지원, 인허가 지원, 재생e 확산 지원) 														
	지역연계 확장성 및 성과확산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분산전원 RE100 활용 연계, 지역 참여형 재생e 확보, 시민이 참여하는 RE100용 지역 분산전원 확산(지역 발전소와의 PPA 계약 방식 우대 등) 시민-기업-지자체가 참여하는 RE100 거버넌스, 기업-지역 협력을 통한 RE100 산단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비용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 마련 														
	사업효과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을 통해 재생 전력 자립률 향상 효과가 높은 산단(자가설비 설치 등) RE100 산단을 통한 지역 탄소중립 기여도 등 														
	계획의 타당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단 및 지역의 재생e 확보계획 및 재생e 설치요건 충족 여부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예산 집행 계획의 타당성 등(모델 개발 비용 산출 등) RE100 산업단지 실증 참여기업의 RE100 조달비율 등 성과목표의 적절성 														
가점(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환경 조성 및 주민참여 기반 마련 여부(3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이격거리 규제</th> </tr> <tr> <th colspan="2">태양광</th> </tr> </thead> <tbody> <tr> <td></td> <td>주거지역 100m 이내</td> <td>도로없음</td> </tr> <tr> <th>항목</th> <th>(a)</th> <th>(b)</th>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지자체 조례에 이격거리 규제가 없는 경우 3점 부여 - 조례가 항목 (a)~(b) 중 2개 충족할 시 2점 부여 - 조례가 항목 (a)~(b) 중 1개 충족할 시 1점 부여 					구분	이격거리 규제		태양광			주거지역 100m 이내	도로없음	항목	(a)	(b)
구분	이격거리 규제															
	태양광															
	주거지역 100m 이내	도로없음														
항목	(a)	(b)														
가점(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업 중 글로벌 RE100 기업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납품하는 기업이 50% 이상인 경우 - 소수점 처리방식: 50% 산출 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올림 - 예) 5개 기업이 참여한 경우 50%(2.5개 기업)는 3개 기업 이상 참여해야 가점 1점 부여 															
동점 처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성적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점수 순으로 고득점인 경우 우선순위 부여 - (정성적 평가) 기업 및 지역 참여노력→지역연계 확장성 및 성과확산→사업효과 →계획의 타당성 고득점 순 - (정량적 평가) 실증사업 참여기업 수→매칭 비율 고득점 순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 참여가 불가(부적합)하며, 산단 내 참여기업은 최소 3개 이상으로 그 중 최소 2개는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4) 기 타

- 신청자 전원이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서류 미제출 등) 제출 마감일부턴 기산하여 10일 간 재공고
- 최종 선정된 기관 수가 공모 예정 수 3개에 미달한 경우, 기선정된 기관은 제외하고 총 3개 수행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추가 공모 예정

5 추진근거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6 신청 방법

가. 접수·공고기간 : 2023.08.14 ~ 2023.09.13(1개월)

나. 제출서류

- RE100 산업단지 실증 수행사업

순번	서류명	양식	부수	대상	비고
1	사업참여 신청서	양식1	1부	주관	
2	사업참여 협약 확인서	양식2	1부	주관+참여기업	
3	참여기업 일반현황	양식3	1부	주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양식4	1부	지자체+주관	
5	지방자치단체·민간 현금 출자(납입) 협약서	양식5	1부	지자체+주관	
6	사업 참여자의 청렴·공정 서약서	양식6	각 1부	지자체+주관	
7	사업계획서	양식7	1부	주관	
8	발표자료	-	1부	주관	자유양식

다. 제출방법 : 우편 접수

- 제출공문을 같이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라. 문의·접수처

접수처	주소	연락처
한국에너지공단(본사) 신재생정책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	052-920-0903

7 유 의 사 항

- 산단 내 참여기업은 한국형 RE100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여 컨소시엄 및 산단내 참여기업은 성과 활용기간 종료 전까지 전담기관의 요청 시 실증사업으로 확보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해야 함
- 본 사업에 관한 제안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을 준용 함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 본 사업에 관한 제안서 작성,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은 전담기관의 자료 및 사업관련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함
- 공고기간 내 미제출(누락 등) 및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서의 경우 사업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평가
- 발표평가를 통한 선정된 수행기관 수가 공모예정 수에 미달한 경우(3개 미만), 기선정된 수행기관은 제외하고 총 3개 수행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추가 공모 예정
-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전담기관과 상호협의하여 해석한 바에 따름